

이의 신청 독촉 및 추가 이의

사건 2005나84701 교수지위확인(서울고법 민사 제2부 나, 박홍우 부장판사)
원고 김명호,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415
피고 학교법인 성균관 대학, 서울 종로구 명륜동 3가 53 이사장 권이혁

위 교수지위확인사건 관련, 두 번의 선고기일(6월 16일, 7월 21일)을 연기, 석명준비명령을 내리는 등의 박홍우 재판장의 파행적인 재판진행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38조 (합의부에 의한 감독)

“당사자가 변론의 지휘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 또는 제136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른 재판장이나 합의부원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판한다.”

에 따라 제기한, 9월 15일자 이의신청에 대한 독촉 및 추가 이의 신청입니다.

추가 이의

- 원고는, 위 사건 (7월 20일)변론재개 결정 후, 민사소송규칙 제43조 (변론재개결정과 변론기일지정)에 따라, (11월 3일, 15번 째)변론기일 지정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홍우 재판장은 정당한 사유도 없이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피고의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과 이를 부추기는 박홍우 재판장

11월 3일자 피고의 증인신청은, 이미 심리 확정된 징계사유에 관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일사부재리 원칙을 벗어난 것으로 법적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고 주장의 정당성은, 아래 두 대법원 판례들로부터 명백합니다.

대법원 1994.11.22. 선고 94다30478



[판시사항] 사립학교법인의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학교법인의 별다른 조치 없이 바로 결정 내용에 따른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나는지 여부(=교원 징계 재심위원회 결정의 효력)

[판결요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2항,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1991.6.19. 대통령령 제13389호) 제16조 제2항 제3호의 각 규정의 취지와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같은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학교 경영자에 의하여 임면되는 것으로서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를 공법상의 권리관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특별한 구제방법으로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한편 학교법인의 교원에 대한 처분이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바로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재심위원회의 결정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유사한 것으로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재심위원회가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처분권자에게 취소, 변경을 명하는 결정뿐만 아니라 직접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러한 결정에 처분권자가 기속되도록 함으로써, 그 결정에 의하여 바로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그 결정 내용에 따른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나도록 한 것으로 보여진다.

[판결원문] “원고들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그 결정일에 위 각 면직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 복직되었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3.1.17. 62도213

[판시사항] 원심이 환송된 사건에 있어 상고심에서 확정된 유죄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다시 심리판단한 실례

[판결요지] 대법원의 환송판결이 환송 전 원심의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그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에 환송한 경우에 환송 후 원심이 위 무죄부분 뿐만 아니라 이미 확정된 유죄부분까지 심리판단한 것은 헌법이 정한 일사불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

3. 피고 성대에게 일방적으로 편파적인 박충우 재판장

(05. 10., 18., 06. 7. 20., 06. 10. 10. 일자 준비명령 등의) 상습적인 제출기한 위반과 일사부재리 원칙을 무시하는 피고에 대하여, 박충우 재판장은 제재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재판지연을 방조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변론녹음 신청, 방어방법의 각하 신청 등 원고의 신청은 단 한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결론

위 사실들로부터 박충우 재판장은 소송지휘 함에 있어, 민사소송법을 수차례 위반하는 등의 직권남용죄를(형법 제123조) 범하고 있음이 명백합니다.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조속한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1월 9일

위 원고 김명호



<http://geocities.com/henrythegreatgod/tocourt.htm>

서울고등법원(민사 제2부 나) 귀중